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32호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공 고

- | | | |
|----------------|--|--------------|
| ○ 공 고 제 1720 호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총 무 과 2 |
| ○ 공 고 제 1722 호 |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여 성 가 족 과 10 |
| ○ 보건소공고 제 33 호 |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 보 건 행 정 과 22 |

고 시

- | | | |
|---------------|-----------------|--------------|
| ○ 고 시 제 122 호 |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토 지 정 보 과 24 |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720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5.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미운영중인 명예반장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통·반장 제도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장의 위·해촉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안 제5조)
- 위촉과 해촉을 임명과 해임으로 변경(안 제5조)
- 명예반장 조항 삭제(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237,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 1**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미운영중인 명예반장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통·반장 제도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반장의 위·해촉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
(안 제5조)
- 위촉과 해촉을 임명과 해임으로 변경
(안 제5조)
- 명예반장 조항 삭제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를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반장의 위·해촉)”을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제5조(<u>통·반장의 임명과 해임</u>) ① -- ----- <u>있으며,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삭 제></u>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남녀로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안에 거주 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 명칭변경 및 동의 통·반 조정시 동일인의 통장 재위촉의 경우에는 연임으로 본다..

4.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호의 연임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재위촉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위촉이 어려운 경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반장의 재위촉 시 통장은 반장의 그간 활동사항을 토대로 재위

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동장은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경고 조치하고, 3회에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1. 해당 통·반 관할구역외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2항제4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반장에 대한 진정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2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각종 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7.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8. 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9. 통반의 통·폐합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을 때.

10.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호 부터 제8호 신설 : 2005. 12. 30.)

④ 제3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 대상자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며,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라 해촉된 자는 통·반장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삭 제>

⑤ 2회연임 임기만료 및 제3항에 따라 해촉된 통장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⑥ 공개모집을 위한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⑦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통장 신분증을 발급한다.

<삭 제>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 <삭 제>

② 명예반장은 반내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 또는 회의 때 선정 한다.

<삭 제>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 - 1722호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청소년시설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문 개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청소년의 능동적인 역할에 부합하는 친숙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로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명시 : (안 별표)
 - ▶ 남동청소년문화의집 ⇒ 남동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운영 등 조항 신설 : (안 제4조)
- 조직 및 구성 조항 신설 : (안 제8조)
- 지도 . 점검 조항 신설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 연 락 처 : 전화 453-5993, FAX 453-58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끝.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청소년시설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문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청소년의 능동적인 역할에 부합하는 친숙한 용어로 변경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센터)

☐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로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명시 : (안 별표)
 - 남동청소년문화의집 ⇒ 남동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 조항 신설 : (안 제4조)
- 조직 및 구성 조항 신설 : (안 제8조)
- 지도·점검 조항 신설 : (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제17조, 제19조
-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②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 기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9조를 따른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16조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수련시설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 개방 및 운영시간) ① 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청소년의 심신 수련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편의 및 정보 제공
4. 지역사회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5. 지역주민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8조(조직 및 구성) ① 수련시설에는 시설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직원(시설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한다.

③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수련시설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장이 임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수련시설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시설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수련시설 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아카데미 인력 및 운영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의 장
2. 지역 주민 대표
3.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수련시설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관내 거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시설장이 위촉한다.

제12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청소년문화의집	남동청소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70(만수동)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 1. 21.]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 ~ 2027) (76p)

5-1-3 청소년 시설·기관·단체 운영 개선·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용어 개선 및 맞춤형 사업 추진(여가부, 지자체)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설종류 간소화 및 친숙한 용어로 변경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센터

- 개별시설 명칭은 지역 환경·특성이나 해당 시설의 주요사업,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사용토록 검토

* (예시) ○○청소년센터, ○○어울림센터, ○○진로센터, ○○센터 등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23-33호

의료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대표자 주소 및 의료기관으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3. 9. 26. (화) ~ 2023. 10. 11. (수) (16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업종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치과의원	아시아드 치과의원	강*정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568, 7층 전체호 (구월동)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위반 (개설 준수사항 지키지 못함)	시정명령

4. 행정처분 법적근거 :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35조
『의료법』 제63조 제1항

5. 참고사항

- 가. 만일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남동구 보건소 의약관리팀 (☎032-453-5088)

2023. 9. 26.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12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26.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60 (운연동)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241 (논현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8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60 (운연동)	2009.11.16.	음실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3.9.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음실로 6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0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3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45 (수산동)	2009.11.16.	덕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3.9.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덕골로 14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5를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241 (논현동)	2023.9.26.	건축물대장 말소	